사업방법서 별지

무배당 KB큰병든든건강보험(16.09)(재가입계약용)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장기손해보험 / 장기질병보험

2. 보험종목의 명칭

가. 보험종목의 명칭 : 무배당 KB큰병든든건강보험(16.09)(재가입계약용)

단, 판매채널, 플랜에 따라 보험종목의 명칭 중 '무배당 KB( )건강보험(16.09)'( )부분의 명칭을 다르게 할 수 있음.

나. 기타

회사는 보험종목의 명칭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추가하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음.

3. 보험의 목적

가. 피보험자의 신체

4.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 최초계약

구 분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
기 본 계 약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갱신계약】	10년만기	전기납	25세~70세	월 납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증입원일당【갱신계약】	15년만기		30세~75세	
의 무 부 가 특 별 약 관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갱신계약】 질병80%이상후유장해【갱신계약】	10년만기	전기납	25세~70세	
		15년만기		30세~75세	
특 별 약 관	질병사망【갱신계약】	10년만기	전기납	25세~70세	
	암사망【갱신계약】	15년만기		30세~65세	
	뇌혈관질환사망【갱신계약】 허혈성심장질환사망【갱신계약】	1~14년만기		(80-보험기간)세	
특 별 약 관	암80%이상후유장해【갱신계약】 일반상해사망【갱신계약】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갱신계약】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추가【갱신계약】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증입원일당추가【갱신계약】 암진단비(유사암 제외)【갱신계약】 유사암진단비【갱신계약】 암직접치료입원일당II(요양제외, 1일이상 180일한도)【갱신계약】 암요양병원입원일당II(1일이상 60일한도)【갱신계약】 암요양병원입원일당II(1일이상 90일한도)【갱신계약】 암수술비 I (유사암포함)【갱신계약】 암수술비II(유사암제외,최초1회한)【갱신계약】 항암방사선치료비【갱신계약】 항암약물치료비【갱신계약】 뇌졸중진단비【갱신계약】 뇌출혈진단비【갱신계약】 질병수술비【갱신계약】 질병입원일당(1일이상)【갱신계약】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갱신계약】 질병수술입원일당(20일한도)【갱신계약】	10년만기	전기납	25세~70세	
		15년만기		30세~75세	

나. 갱신계약

구 분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
기 본 계 약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갱신계약】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증입원일당【갱신계약】	10년만기	전기납	35세~90세	월 납
		15년만기		45세~85세	
		1~14년만기		(100-보험기간)세	
의 무 부 가 특 별 약 관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갱신계약】 질병80%이상후유장해【갱신계약】	10년만기	전기납	35세~90세	
		15년만기		45세~85세	
		1~14년만기		(100-보험기간)세	
특 별 약 관	질병사망【갱신계약】 암사망【갱신계약】 뇌혈관질환사망【갱신계약】 허혈성심장질환사망【갱신계약】	10년만기	전기납	35세~70세	월 납
		15년만기		45세~65세	
		1~14년만기		(80-보험기간)세	
특 별 약 관	암80%이상후유장해【갱신계약】 일반상해사망【갱신계약】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갱신계약】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추가【갱신계약】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증입원일당추가【갱신계약】 암진단비(유사암 제외)【갱신계약】 유사암진단비【갱신계약】	10년만기	전기납	35세~90세	월 납
	암직접치료입원일당II(요양제외, 1일이상 180일한도)【갱신계약】 암요양병원입원일당II(1일이상 60일한도)【갱신계약】 암요양병원입원일당II(1일이상 90일한도)【갱신계약】 암수술비I(유사암포함)【갱신계약】 암수술비II(유사암제외,최초1회한)【갱신계약】 항암방사선치료비【갱신계약】	15년만기		45세~85세	
	항암약물치료비【갱신계약】 뇌졸중진단비【갱신계약】 뇌출혈진단비【갱신계약】 질병수술비【갱신계약】 질병입원일당(1일이상)【갱신계약】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갱신계약】 질병수술입원일당(20일한도)【갱신계약】	1~14년만기		(100-보험기간)세	

주) 1.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2. 재가입시 재가입전 계약에서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세부보장별 소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부보장을 포함)의 소멸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의 가입이 불가능함.

2-1. 재가입시 잔여보험기간이 재가입전 계약의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 가입가능한 보험기간 중 가장 긴 보험기간을 적용함.

3. 기본계약과 특별약관의 갱신기간은 동일하게 적용함.

3-1. 3.에도 불구하고 2-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약과 특별약관의 갱신기간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

4. 【갱신계약】은 최초계약의 보험기간 종료 후 갱신종료나이에 도달할 때까지 자동으로 갱신됨.

4-1.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 후 갱신시 그 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함.

5. 【갱신계약】의 갱신종료나이는 아래와 같음.

구분	갱신종료나이
질병사망【갱신계약】 암사망【갱신계약】 뇌혈관질환사망【갱신계약】 허혈성심장질환사망【갱신계약】	80세
그 외	100세

5.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의무부가 특약		세부내용
납입면제특약 의무부가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갱신계약】	피보험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는 경우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갱신계약】, 질병80%이상후유장해【갱신계약】 특별약관을 의무가입 하여야 함.
	질병80%이상후유장해【갱신계약】	

6.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7.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8. 갱신계약에 관한 사항

1) 대상

- 【갱신계약】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

2) 보험료 계산에 관한 사항

가) 【갱신계약】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은 갱신주기마다 자동갱신 됨(10년, 15년)

나) 【갱신계약】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의 갱신시 보험료 통보

- 회사는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납입할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통보함

다) 갱신시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은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함. 단,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까지 잔여 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함.

3) 보험료 재산출에 관한 사항

- 【갱신계약】 에 해당하는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은 갱신시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사용하며, 갱신계약 보험료는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계약의 해당 보험년도 개시일부터 각 담보별 갱신 보험기간 동안 적용함.

4) 보험료 납입유예, 계약부활 등 계약변경시의 보험료 적용

- 계약변경시의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유예, 계약부활 등 계약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를 적용함.

5) 보험료 납입방법

- 【갱신계약】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전기간 납입하는 것으로 함

9. 보험료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이 보험의 적립보험료의 운영은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에서 규정한 보장성 보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 내로 함

나. 적립보험료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10.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시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된 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율은 보장보험료는 평균공시이율 + 1%범위내에서 적용하며, 적립보험료는 적용하지 아니함

11. 선납보험료에 관한 사항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이 경우 선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적립보험료는 이 보험의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드리고,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보장보험료에 한하여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함

12. 추가적립보험료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추가적립보험료를 운영하지 아니함)

13.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에서 기본계약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중 적은 금액 (이 계약에서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범위 내에서 중도인출 할 수 있음.

단, 중도인출은 보험기간 내에 한하며,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함.

나. 가.에도 불구하고 중도인출액의 총 누적액의 한도는 중도인출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기본계약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중 적은금액의 80%를 한도로 함

다. 중도인출시 중도인출금액 및 만기환급금(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 시점까지 중도인출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만기환급금(또는 해약환급금)이 감소함

14. 보험계약대출이율에 관한 사항

-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장성-1701 공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정함.

15.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가. 이 보험의 적립부분 계약자적립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율은 「보장성-1701 공시이율」로 한다.

나. 보장성-1701 공시이율은 매월 마지막날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한다.

다. 회사는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적용하여 보장성-1701 공시이율을 결정한다.

$$\text{공시기준이율}(\%) = \text{운용자산이익률} \times (1-\alpha) + \text{외부지표금리} \times \alpha$$

1)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

(가) 가중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외부지표금리의 가중치}(\alpha) = \frac{A/B + C}{A+C}$$

$$\text{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1-\alpha) = 1 - \frac{A/B + C}{A + C}$$

- A : 직전년도초 계약자적립액
- B :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 C : 직전년도 보험료 수입

(나)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다)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라) 가중치는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60%를 초과할 수 없다.

(마)「직전년도초 계약자적립액」과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보험료 수입」은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바)「보험료 수입」은 1년간 받은 보험료를 말한다.

2)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가)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begin{aligned}\text{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 {} & \text{국고채(5년) 수익률} \times \text{국고채 가중치}(\beta 1) \\ & + \text{회사채(무보증 3년, AA-) 수익률} \times \text{회사채 가중치}(\beta 2) \\ & + \text{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 \times \text{통화안정증권 가중치}(\beta 3) \\ & + \text{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 \times \text{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beta 4)\end{aligned}$$

(나) 외부지표 공시기관 등이 상기 외부지표금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사유 등으로 다른 지표금리로 대체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된 지표금리를 사용할 수 있다.

(다) 국고채(5년), 회사채(무보증 3년, AA-) 및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과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은 공시기준이율 적용시점의 전전월말 직전3개월 가중이동평균을 통해 산출한다.

(라) 국고채 가중치($\beta 1$), 회사채 가중치($\beta 2$), 통화안정증권 가중치($\beta 3$),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beta 4$)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text{국고채 가중치}(\beta 1) = a / (a + b + c + d)$$

$$\text{회사채 가중치}(\beta 2) = b / (a + b + c + d)$$

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3) = c / (a + b + c + d)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4) = d / (a + b + c + d)

- a는 회사가 보유한 국내 발행 국공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b는 회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c는 회사가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d는 회사가 보유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0%이상 100%이하로 결정한다.

3) 운용자산이익률

(가) 운용자산이익률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운용자산이익률 = 운용자산수익률 - 투자지출률

(나) 운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자사의 투자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동 기간동안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 운용자산수익률(\%) = \frac{(2 \times 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times 100}{(직전13개월말\ 현재운용자산 + 전월말\ 현재운용자산 - (직전\ 1년간\ 투자영업수익 - 직전\ 1년간\ 투자영업비용))}$$

$$※\ 투자지출률(\%) = \frac{(2 \times 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times 100}{(직전13개월말\ 현재운용자산 + 전월말\ 현재운용자산 - (직전\ 1년간\ 투자영업수익 - 직전\ 1년간\ 투자영업비용))}$$

(다) 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라) 재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가 자산운용손익 전체를 인식하는 자산이 존재하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자산 및 관련 투자영업수익은 재보험계약을 출재한 보험회사가 아닌 이를 인수한 보험회사의 공시기준이율 산출을 위한 운용자산이익률 계산에 포함한다.

라.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마. 보장성-1701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2%를 적용한다.

바. 세부적인 보장성-1701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보장성-1701 공시이율 적용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16. 보험료 납입중지(유예)제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보험료 납입중지(유예)제도를 운영하지 아니함)

17. 보험료 납입면제 관련 사항

가.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또는 질병80%이상후유장해 발생시 해당 피보험자의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함.(단,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해당특약이 소멸된 경우는 제외함)

나. 위 가.에서 정한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는 납입이 중지됨.

다. 위 가.에도 불구하고 재가입전 계약이 납입면제 된 경우 재가입시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재가입 계약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함.

18. 조건부 인수를 위한 특별약관

가. 특정 신체부위 및 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에 관한 사항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등으로 보장을 제한하는 경우(단, 이 경우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함) 특정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 및 특정질병을 제외한 기타질병을 보상함.

나. 특별조건부(표준하체 인수) 특별약관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아래의 대상 특별약관에 한해 특별조건부(표준하체 인수) 특별약관을 부가할 수 있음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갱신계약】	암사망【갱신계약】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증입원일당【갱신계약】	암80%이상후유장해【갱신계약】
질병80%이상후유장해【갱신계약】	뇌졸중진단비【갱신계약】
질병사망【갱신계약】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증입원일당추가【갱신계약】
암진단비(유사암 제외)【갱신계약】	뇌혈관질환사망【갱신계약】
유사암진단비【갱신계약】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갱신계약】
암직접치료입원일당II(요양제외, 1일이상 180일한도)【갱신계약】	허혈성심장질환사망【갱신계약】
암요양병원입원일당II(1일이상 60일한도)【갱신계약】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추가【갱신계약】
암요양병원입원일당II(1일이상 90일한도)【갱신계약】	뇌출혈진단비【갱신계약】
암수술비I(유사암포함)【갱신계약】	질병수술비【갱신계약】
암수술비II(유사암제외,최초1회한)【갱신계약】	질병입원일당(1일이상)【갱신계약】
항암방사선치료비【갱신계약】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갱신계약】
항암약물치료비【갱신계약】	질병수술입원일당(20일한도)【갱신계약】

2) 특별조건부(표준하체 인수) 특별약관이 부가된 해당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진단결과,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특별조건부(표준하체 인수) 특별약관에서 정한 할증보험료법 또는 보험금감액법으로 가입하여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음
3) 특별조건부(표준하체 인수) 특별약관이 부가된 해당계약을 할증보험료법 적용시 위험지수에 의한 의적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함
4) 할증보험료법을 적용시 별도로 할증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을 적립함

19. 부가서비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20.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사항

가.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님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 회사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1.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3.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
4.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나. 회사는 가.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알림.

다. 가.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 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또는 반환받을)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안내함.

라. 회사는 가.에 따라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최신의 통계를 반영하여 보험료산출기초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적용함.

: 계약내용 변경일부터 재산출된 보험료산출기초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보험금이 변경될 수 있음.

마.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등을 지급하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음.

21. 기 타

가. 이 상품은 "무배당 KB큰병든든건강보험(16.09)" 사업방법서 별지 "8.만기재가입에 관한 사항"에 따라 재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함

나.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당시 또는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함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의 운전과 관련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상해를 입을 위험 정도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짐. 이륜자동차의 운전자가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을 부가시에는 이륜자동차 운전을 제외한 직업 또는 직무에 해당하는 상해급수를 적용함.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음.

다.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담보하는 특별약관의 경우 보험기간은 80세만기 이내로 하고 보험금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로 하며 만기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 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이내로 함.

라. 회사는 암 직접치료입원일당의 경우 입원을 보장함에 있어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사실을 상품설명서에 명시하고, 계약자 확인을 통해 청약시점에 인식토록 한다.

마. 회사는 암수술을 보장함에 있어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는 약관에서 정한 "암수술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사항을 상품설명서에 명시하고, 계약자 확인을 통해 청약시점에 인식토록 함

바. 대리청구인 지정 서비스에 대한 안내

1)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계약(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으로 가입하는 경우, 회사는 대리청구인 지정 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대리청구인 지정 서비스 안내사항을 상품설명서에 명시 및 설명하여야 함. 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 녹음함으로써 교부하고 설명한 것으로 봄.
2)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계약(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으로 가입하는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야 함. 대리청구인은 특정인을 지정(기명)하거나, 자격을 갖춘 사람(무기명)으로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기명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무기명 대리청구인이 기본 지정 됨.
3) 위 2)의 지정 가능한 대리청구인 범위는 아래와 같음.
   ①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②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단, 무기명 대리청구인 지정은 피보험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4) 위 2)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의 지정 편의를 위해 가족관계서류 수령을 생략할 수 있음.
5) 위 2)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대리청구인 미지정을 요청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하며, 회사는 가입시 대리청구인이 지정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미지정 사유 구분, 모집인 확인, 전산적 재확인, 사후 관리 등 보험금 청구불능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관리 체계를 운영함.

사. 기타 특별약관 운영에 관한 사항

1) "무배당 KB큰병든든건강보험(16.09)" 계약에서 해당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아래 항목을 적용하지 않음
2) 암수술비Ⅰ(유사암포함)【갱신계약】 특별약관과 암수술비Ⅱ(유사암제외,최초1회한)【갱신계약】 특별약관은 동일한 가입금액으로 동시에 가입하여함.
3) 암진단비(유사암 제외)【갱신계약】 특별약관과 유사암진단비【갱신계약】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하여야 함.
4) 질병수술비【갱신계약】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50만원 이하로 운영함.
5) 질병수술입원일당(20일한도)【갱신계약】 특별약관은 질병입원일당(1일이상)【갱신계약】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함.
6) 항암방사선치료비【갱신계약】 특별약관과 항암약물치료비【갱신계약】 특별약관은 동일한 가입금액으로 동시에 가입하여야 함.
7) 암요양병원입원일당Ⅱ(1일이상 60일한도)【갱신계약】, 암요양병원입원일당Ⅱ(1일이상 90일한도)【갱신계약】 특별약관은 암직접치료입원일당Ⅱ(요양제외, 1일이상 180일한도)【갱신계약】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함.
8) 이 상품의 사업방법서 별지에 명기된 특별약관 외 독립특약을 추가로 부가하여 운용할 수 있음